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 - 62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사항 공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성북구 옴부즈만의 2023년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23년도 성북구 ombudsman 운영보고서

현장 중심! 민생 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

 sb 성북 **성북구 ombudsman**

목 차

I. 성북구 옴부즈만 개요

-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4
- 2. 구성 및 운영 6
- 3. 직무 및 권한 7
- 4. 고충민원의 개념과 처리절차 8

II. 옴부즈만 운영 현황

- 1.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11
- 2. 처리내역 12
- 3. 주요민원 처리 사례 13

III. 참고자료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

1. 성북구 옴부즈만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2. 구성 및 운영
3. 직무 및 권한
4. 고충민원의 개념과 처리절차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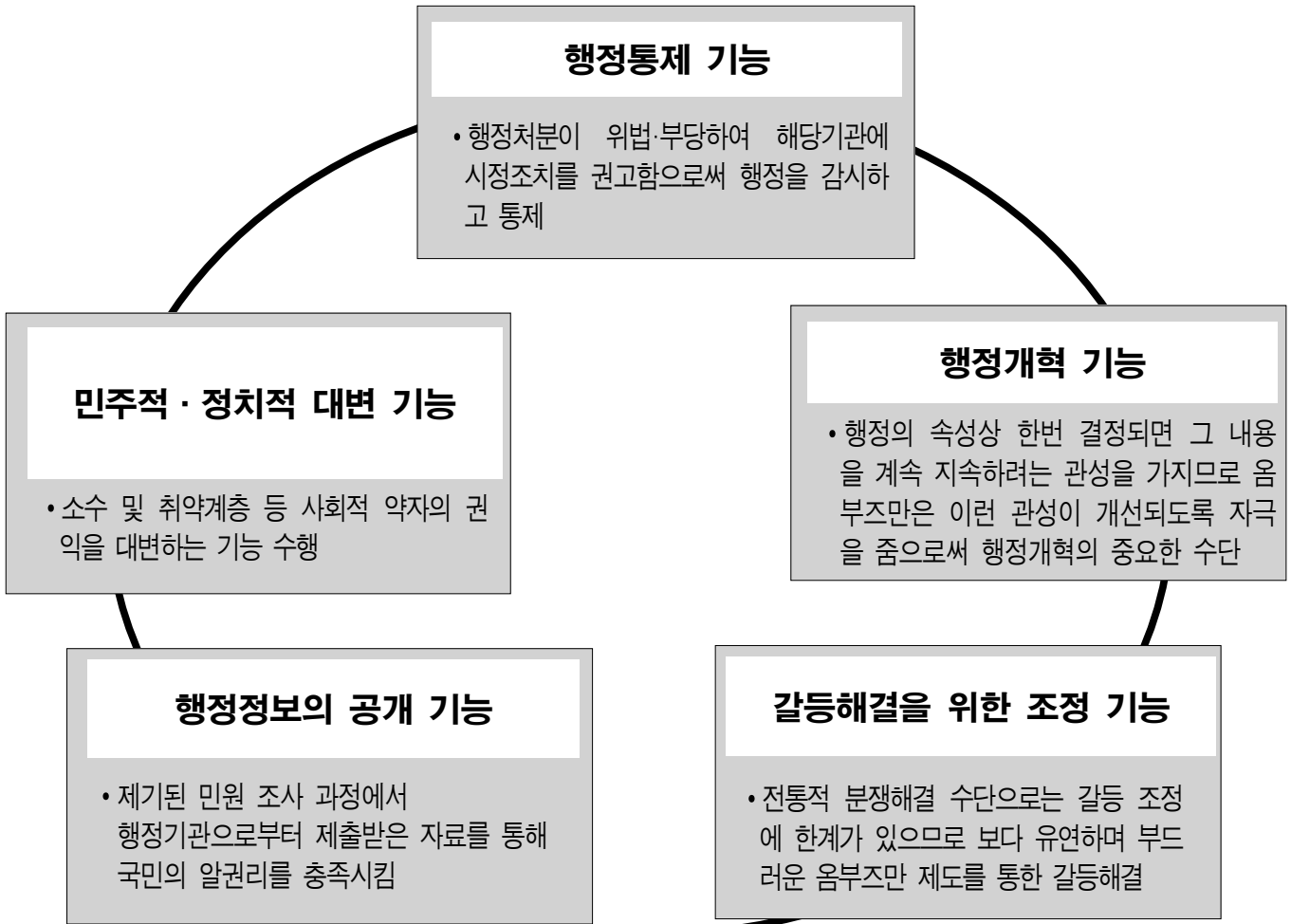
가. 도입배경

- 옴부즈만(Ombudsman)은 “대표자, 대리인”이란 뜻으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감시하는 비사법적인 시민권익 보호제도로써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행정권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으로 처음 설치된 이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개 국가가 도입해 운영중이다.
- 우리나라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 성북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2021. 7.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범적 기초를 마련하였고, 옴부즈만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행정과 국민 상호 간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공익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나.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옴부즈만의 기능



라.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 7. 15.
-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22. 1. 26.
- 성북구 옴부즈만 모집 공고 : 2023. 2. 3.
-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3. 21.
- 제289회 성북구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결 : 2022. 4. 20.
-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 2022. 5. 26.
- 제1기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개시 : 2022. 6. 8.
- ‘23년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참석 : 2023. 5. 3.
- 2022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 : 2023. 8. 2.
- 제5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 2023. 11. 15.

2.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및 임기 등

- 지 위 : ombudsman 독립적 직무수행
- 구성인원 : 3인
- 임 기 : 2년 (1회 한정 연임 가능)
- 선 발 : 공개모집 및 추천(서류 및 면접심사) ⇒ 구의회 동의 ⇒ 구청장 위촉
- 운영형태 : 독임제 + 합의제 (ombudsman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상호 협의·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전체 ombudsman을 소집하여 결정)
- 근무방법 : 주1회 1인 순환근무
- 운영시간 : 월 / 수 / 금 14:00 ~ 17:00(3시간)
- 구성현황

연번	구분	성명	위촉일	주요 경력
1	대표 ombudsman	이용재	2022.05.26.	- 現) (주) 제온기술 - 前) 서울특별시 지방시설사무관(토목)
2	ombudsman	장광순	2022.05.26.	- 前)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세무) - 前)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3	ombudsman	이강봉	2022.05.26..	- 現) 한국역량평가개발원 전문위원 - 前)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나.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경력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 3년 이상 경력자
- 사회적 신망과 행정 식견 및 경험자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3. 직무 및 권한

가. 직무 관할

-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나. 주요 직무 및 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 옴부즈만 조치 유형

- **시정요구** : 행정기관의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표명** :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종결** :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신속히 해결방안을 안내하여 해소되거나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
- **감사의뢰** :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취하** :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원에 의하여 취소를 한 경우
-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이첩** : 다른 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다. 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이 아닌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경과(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서울특별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고충민원의 개념과 처리절차

가. 고충민원의 개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나. 고충민원의 처리절차

① 고충민원 신청

■ 고충민원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구청 홈페이지 신청
- ▶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 가능
- ▶ 처리기한 : 60일 이내

② 조사여부 결정

■ 담당 음부즈만 지정

■ 조례 제5조,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 배제사항 여부 검토

③ 조사 착수 및 통보

■ 신청인 조사 개시 통보

- ▶ 조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조사 사실 통보(음부즈만→민원인)
- ▶ 해당부서 고충민원 통보 및 자료 요구

④ 조사 실시

■ 고충민원 조사 실시

- ▶ 민원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 ▶ 해당부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 ▶ 조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⑤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 처리

- ▶ 해당부서 조치결과 및 권고 사항 통보
- ▶ 민원인에게 7일 이내 조사결과 통지

II. 옴부즈만 운영 현황

1.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2. 처리내역
3. 주요민원 처리 사례

1.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가. 민원 처리결과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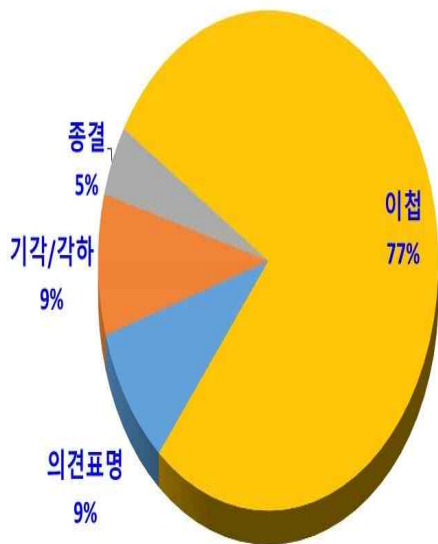
년도	계	직접 조사						취하	이첩
		시정 권고	중재 합의	의견 표명	기각/ 각하	감사 청구	종결		
2023	22	-	-	2	2	-	1	-	17
2022	6	-	-	-	-	1	1	-	4

나.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년도	계	환경 보건	교통 도로	주택 건축	공원 치수	경제 산업	복지 문화	기타
2023	22	4	3	2	1	1	3	8
2022	6	-	1	4	-	-	-	1

민원 처리 현황



민원 분야별 현황



2. 처리내역

연번	민원등록일	민원내용	처리결과
1	2023. 02. 21.	· 성북청년 ○○ ○○○○ 설계공모 당선작 표절 의혹 제기	당선취소 확인후 → 종결
2	2023. 03. 06.	· 아파트 최상층 세대 결로로 인한 전기 사용 장애 문제 해결 요청	각 하
3	2023. 05. 03.	· 자동차 등록 관련 공채매입금 손실 민원	의견표명
4	2023. 05. 12.	· 아리랑 도서관 소음 관련 민원	해당부서 이 첩
5	2023. 06. 08.	· 적법한 불법주차신고를 무시하는 성북구에 대한 민원 제기	의견표명
6	2023. 06. 22.	· 공사 중지 행정명령 요청	기 각
7	2023. 06. 28.	· 공원 이용안내판 보수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설치 요청	해당부서 이 첩
8	2023. 07. 13.	· ○○○교회 공사 소음 민원	해당부서 이 첩
9	2023. 07. 31.	· 직원 민원응대에 대한 교육 요청	해당부서 이 첩
10	2023. 08. 13.	· 길음역 10번출구 안전구역 통로 소등시간 조정 요청	해당부서 이 첩
11	2023. 08. 22.	· ○○사 염불 소음 민원	해당부서 이 첩
12	2023. 08. 23.	· 호텔○○○○ 앞 공개공지 사유화 단속	해당부서 이 첩
13	2023. 09. 23.	· 월곡 오거리 광장 소음 민원	해당부서 이 첩
14	2023. 10. 05.	· 종암동 지하철공사 소음과 울림현상	해당부서 이 첩
15	2023. 10. 09.	· 공구대여서비스 이용료 무료 요청	해당부서 이 첩
16	2023. 10. 19.	· 길고양이 급식 분쟁 관련	해당부서 이 첩

연번	민원등록일	민원내용	처리결과
17	2023. 10. 28.	· 육아지원센터 앞 무료커피증정 행사 중지 요청	해당부서 이 첩
18	2023. 11. 21.	· 민방위 교육 소집 관련 불필요한 서류 요구	해당부서 이 첩
19	2023. 12. 10.	·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해당부서 이 첩
20	2023. 12. 16.	· 통신판매업자 불량과일 판매 조치 요청	해당부서 이 첩
21	2023. 12. 25.	· 토지 재조사 요청	해당부서 이 첩
22	2023. 12. 31.	· 길음2동 주민센터 임시주차장 관리 요청	해당부서 이 첩

3. 주요민원 처리 사례

【 ○○○ 창업센터 설계공고 당선작 표절 의혹 제기 】

【1】 민원 개요

가. 민원 신청 : 2023. 2. 21.

나. 민원 내용

2022.12.05. ○○○ 창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설계를 공모한 바, 설계공모 당선작이 표절로 의심되어 당선취소를 요청함과 동시에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논의 및 적절한 처분 요청

【2】 조사

가. 조사 일시 : 2023. 2. 23. ~ 2023. 2. 28.

나. 조사자 : 성북구 읍부즈만 1명

다. 조사 내용

- 1) ○○○ 창업센터 설계공모 추진 내용
 - 2023. 02. 09. : 설계공모 작품심사 계획
 - 2023. 02. 15. : 설계공모 심사결과 보고
 - 2023. 02. 15. : 설계공모 심사결과 알림 공고 의뢰
 - 2023. 02. 17. : 『○○○ 창업센터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표절 이의 제기
※ 건축과에 민원 제기
 - 2023. 02. 20.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추가 개최 알림
 - 2023. 02. 22. : 설계공모 제2차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당선작 취소 결정)
 - 2023. 02. 23. : 설계공모 제2차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 2) 담당 부서인 건축과에 자료 제출을 요청(2023. 02. 23.)하고 제출된 자료를 확인(2023. 02. 28.)

【3】 조사 결과

- 가.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 나. 설계공고 당시의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13p. 4.2항 다. 7)』에 의하여,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음.
- 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미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당선작의 취소를 결정하였으므로 내부 종결 처리함.

【4】 조치 의견 : 당선취소 확인 후 종결

가. 성북구 읍부즈만은 이 건 고충민원을 접수한 시점에서 이 사안과 관련

담당부서에서 이미 시행한 심사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소집, “당선작 수상 취소 결정의 건”을 상정, 5인 만장일치로 ‘당선자 수상 취소 결정’을 한 바

나. 내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서에서 적법한 결정을 한 후 민원을 종결한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4항에 의거 통보하고 종결한다.

【 자동차 등록 관련 공채매입금 손실 민원 】

【1】 민원 개요

가. 민원 신청 : 2023. 05. 03.

나. 민원 내용

자동차 등록업무를 딜러에게 대리 맡기고 예정에 없던 공채를 매입(4월이 되면 100% 환불가능하다고 함)하고 공채매입 영수증과 미사용 확인서를 받아 4월 말에 신한은행에서 중도해지하여 지불한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았는데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공채를 매입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국민이 져야 하는 건지 공채매입에 대한 안내를 딜러와 저는 받은 적이 없으므로 부실한 안내에 대한 담당자 조치와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세한 안내 요청

【2】 사실관계

가. 민원발생 경위

- 1)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1600cc 미만 차량의 도시철도 공채 매입 의무 면제 시행에 대한 서울시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소급 적용(2023.3.27. 개정, 2023.3.1. 소급적용)
- 2) 차량등록에 관한 위임을 받은 행정사 사무소에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

서 미사용 증명서 및 안내문 교부

- 3) “자동차제작·판매자 등”(딜러)의 위임을 받은 행정사 사무소의 차량 등록 대행업무 처리과정 중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사항에 대한 안내 미흡

나. 부서의견(교통행정과)

1) 검토 의견

- 도시철도법에 의거 1,600cc 미만 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이었으나,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면제 시행(2023.3.1. 소급적용)에 따라 1,600cc 미만 자동차가 면제 대상으로 확대 되었음.
- 그러나,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 지연(2023.3.27. 개정)으로 인하여 1,600cc 미만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채 매입 면제를 소급적용, 중도상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미사용 증명서 및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음.
-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속칭 딜러)이 대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행정사무소”에 자동차등록업무를 많이 위임하여 대행하고 있음
- 행정사무소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진행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사항에 대한 안내를 자동차제작·판매자 등, 자동차 소유주에게 철저히 하지 않아 민원인이 채권을 매입하고 중도상환일의 채권 할인을 변동으로 수령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민원인은 본인의 자동차등록을 딜러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딜러의 위임을 받은 대행 행정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구청 담당자는 대행 행정사 사무소에 안내문 및 미사용 증명서 등을 안내하였음
- 위의 민원사항을 대행한 행정사 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원사항은 차량을 실제로 등록한 행정사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조사 결과

가. 조사 일시

- 1) 1차 조사(서면) : 2023. 5. 4. 교통행정과에 고충민원조사 통보
- 2) 2차 조사(서면) : 2023. 5. 9. 교통행정과의 민원관련 의견서 제출(교통행정과-35791호)

나. 조사자 : 성북구 읍부즈만 1명

다. 관련 규정

- 1) 도시철도법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제1항 제2호
-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제4호
- 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2590(2023.2.2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 면제(예정) 시행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3732(2023.3.2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라. 읍부즈만 판단

- 1)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등록업무 시 위임 받은 자에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나
- 2) 위임 받은 자가 소유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담당자의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
- 3) 그러나 소유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위임 받은 자에게 철저한 안내가 필요함

【4】 조치 의견 : 의견 표명

가. 위임에 의한 차량등록 시 공채매입에 대해 설명과 안내문이 차량 소유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매입하지 않아도 될 공채를 매입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 교통행정과에 향후 더 철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한 후 종결함

【 정릉동 000-000 공사중지 행정명령 요청 】

【1】 민원 개요

가. 민원 신청 : 2023. 06. 22.

나. 민원 내용

성북구 정릉동 000-000 근생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증거보전(북부지방법원) 결정내용에 따른 이 공사의 발주처가 신청인에게 계약해지 통보(2023.5.1.)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율과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된 공사내역의 특정 및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 감정인의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사중지의 행정명령을 요청

【2】 사실관계

가. 민원인 주장

- 1)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확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므로 공사계약 해지 통보함
- 2)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다른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함
- 3) 공사중인 공사를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중지 행정명령 해줄 것을 요청함

나. 부서의견(건축과)

1) 민원발생경위

- 2021. 08. 09. : 건축허가서 접수(2021.09 03. 허가처리)
- 2022. 01. 19. :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의신청서 접수(2022.01.24. 처리)
- 2022. 01. 28. : 착공신고
- 2023. 05. 01. : 건설업체 계약해지 내용증명 통보
- 2023. 05. 30. : 계약해지통보일(2025.05.01.) 기준 공사의 기성율 및 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증거보전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 06. 06.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2023. 06. : 유선상 공사중지 요청민원 접수 후 해결을 위해 공사 관계자에게 유선상 민원처리 협조 요청
- 2023. 06. 19. : 서울상담민원 접수(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구청의 공사중지 요청)
- 2023. 06. 22. : 공사중지의 행정명령에 관한 고충민원 제출
- 2023. 06. 25. : 서울상담민원 회신(건축도중 위반사항이 존재할 경우,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이 가능하며, 본 건은 민사적인 분쟁에 따른 증거보전이므로 법원의 공사중지 신청토록 안내)
- 2023. 06. 27. : 유선상 지속적인 민원제기 따라 건축주에게 민원해결 협조촉구 공문 송달
- 2023. 07. 03. : 민원해결 협조요청에 따른 답변 접수

2) 민원인 주장에 대한 검토

- 허가권자는 공사도중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25조에 의거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2022. 07. ~ 2022. 11.사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총 4회 모두 위반사항 없이 적합하다고 제출되었으며 위법 공사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음
- 위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는 적합하게 제출되고 위법공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위법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 허가권자가 임의로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없음
- 본 건은 공사대금 지급관련 민사사건에서 비롯된 법원의 증거보전명령이므로 그에 따른 공사중지는 법원에 신청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당사자간 해결해야할 민사적 사항이나 건축주 및 시공사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한 민원 해소를 요청함
- 향후 조치로는 감리자에게 위반사항 발생시 즉각 보고토록 행정지도

【3】 조사 결과

가. 조사 일시

- 1) 1차 조사(서면) : 2023. 6. 29. 건축과에 고충민원조사 통보
- 2) 2차 조사(서면) : 2023. 6. 27. 건축과의 민원관련 의견서 제출(건축과-19597호) 및 신축허가 신청처리 자료 등 3건
- 3) 3차 조사(대면) : 2023. 7. 30. 건축과 담당자와 현황 청취 및 자료 보완 제출요구(2023.8.1. 보완자료 제출)

나. 조사자 : 성북구 읍부즈만 1명, 감사담당관 담당 직원 1명

다. 관련 규정

- 1) 건축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제79조 제1항
- 2) 건축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라. 읍부즈만 판단

1) 공사중지 요건에 대한 판단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항에서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판단 결과

- 위 법령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사실관계 판단을 살펴본 결과 관계부서에서 제시한 공사중지를 위한 법령요건과 사실관계확인에서 공사중지

행정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고

- 위 요건 판단을 위한 건축과의 참고자료인 감리보고 등에서 법령위반에 대한 사실확인결과를 근거한 건축관련 철차와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및 위법공사보고서 등에 위법·위반사항의 부존재로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을 수 없다.
- 민원 해소를 위한 허가권자로서 행정지도와 향후 조치계획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 의견 : 기각

가. 민원 신고 내용을 수용할 사유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공사중지 행정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항임과

나.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 당사자간 해결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민원 사항을 통보하여 원만한 민원해소를 관리 및 행정지도

Ⅲ. 참고 자료

1. 서울특별시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관계행정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옴부즈만이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관계 행정기관 등”이란 구의 소속 행정기관,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3명 중 1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결원인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4.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5.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읍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읍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회의) ① 읍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표 읍부즈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사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 읍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읍부즈만 회의는 재적 읍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읍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 5. 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 ③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서울특별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5. 그 밖에 읍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읍부즈만은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2.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ombudsman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ombudsman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권고) ombudsman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ombudsman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ombudsman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ombudsman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처리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ombudsman의 시정 권고 등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ombudsman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의뢰)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읍부즈만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읍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읍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